

2025년 「제4회 여성기업주간」 여성기업 유공자 포상 계획 공고

제4회 여성기업주간을 맞아 여성 창업 활성화 및 여성기업 발전에 모범이 되는 여성기업 유공자 등을 발굴·포상하기 위해 『제4회 여성기업주간』 포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1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행사개요

목 적 : 제4회 여성기업주간을 맞아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여성경제인들을 선정·포상함으로써 여성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경영 및 근로의욕을 고취

시상식 : 2025년 제4회 여성기업 주간 행사(7월 예정)

주최/주관 : 중소기업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

포상종류

○ 정부포상 : 산업 훈·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구분	산업훈장	산업포장	표창(대통령, 국무총리)
수공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 수공기간은 현 재직기관 외에 관련 분야 여성경제활동 경력 합산 가능

○ 장관(이하)표창 : 기획재정부장관, 중소기업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세청장, 조달청장, 특허청장 등

신청기한 : ~ 2025년 2월 12일(수)까지

*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처(메일) 도착(접수)분에 한함

신청방법 : 이 공고문의 7페이지 참고

- 3개 분야 (62점 시상 예정) : ①모범여성기업인, ②모범여성근로자, ③여성기업육성공로자 및 단체

① 모범여성기업인

- 건전한 기업가정신으로 경영합리화, 수출증대를 위한 기술개발 등에 적극 노력하여 모범이 되는 여성기업 대표자
- 고용창출, 매출, 수출 및 기술발전 등을 통한 국가경제기여, 여성고용 등 여성 친화 기업문화 조성 노력, 근로자 중심 경영, 사회공헌 등을 평가
- 부처별 포상 후보자 우대 및 자격사항

- **공통사항** : 매출, 고용, 수출과 성장을 통한 국가경제기여, 여성친화 경영, 사회공헌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 **농림축산식품부** : 식품 제조업체, 국내 농림, 축산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 우대(국내산 사용 등)
- **고용노동부** :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시 심사에서 제외,
일자리창출,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실적 우수업체 우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및 육아 휴직제도 도입 등 근로환경 개선업체 우대
- **국세청** : 기장 미신고 업체는 심사에서 제외
- **조달청** : 공공구매 조달실적 우수업체 우대

② 모범여성근로자(임원포함)

- 기술개발, 노사화합 등 중소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
-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및 탁월한 업무 능력을 통해 타의 모범이 되는 여성근로자
- 근무기간, 직무수행능력, 경영혁신 기여도, 기술개발 및 업무효율 향상 노력, 자기계발 등을 고려하여 평가

③ 여성기업육성공로자 및 단체(기관)

- 여성기업 발전 및 지원에 공로가 있는 각 단체(기관) 소속 임직원으로서 여성기업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 * 각 단체(기관) 추천인원은 최대 2인 이내로 제한, 비상근 임직원 제외
 - * 근무경력: 현 재직기관(기업) 외 여성기업 육성·지원·연구 관련 기관(기업)의 경력 합산 가능
- 여성기업육성 및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 여성기업 발전에 기여하는 설립 후 2년이 경과한 단체(기관), 학계, 연구기관 또는 기업 등
- 여성기업생산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임직원
- 근무기간(설립·운영기간), 직무수행능력, 자기계발, 설립운영기간, 여성기업 지원 실적 등을 고려하여 평가

※ 공공구매 우수기관 우대

□ 자격제한

- 중복수여의 금지 : 상훈법 제4조(중복수여의 금지), 동법 시행령 제17조 2(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 등)와 정부포상업무지침에서 정한 포상기준 준수
-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추천예정일(2025.4.1.)
 -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자는 훈장 7년, 포장 5년,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될 수 있음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처분 대상자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중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등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 추천제한(「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 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단,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합신용정보중기
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기타 '정부포상업무지침'에서 정한 추천제한에 해당하는 자

○ 각 정부부처의 내부포상지침상 추천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자

□ 개인 직접 신청 : 이메일(posang@wbiz.or.kr) 신청

□ 추천기관의 추천

- 중소벤처기업부(지방청) 및 지방자치단체(중소기업 및 여성관련)
- 여성기업단체(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여성발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등)
- 지방자치단체, 직능별 단체
- 중소기업협·단체 및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금융기관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지역센터 포함) 등

<접수방법 안내>

■ 이메일(posang@wbiz.or.kr) 접수

■ 제출자료 : 신청부문별 ① 작성자료 + ② 증빙자료* 모두 제출

* ① 작성자료 : [\[붙임1\] 신청양식 한글\(HWP\)파일](#) 및 [\[붙임2\] 총괄표 엑셀\(EXCEL\)파일](#)

② 증빙자료 : [증빙자료 스캔\(PDF\)파일](#)

- (주의사항1) 접수 시 신청누락 방지를 위해 **'메일 제목'*** 반드시 준수

* 메일 제목 : **신청부문 추천대상자성명(업체명)**

(예시) 모범여성기업인_홍길동(길동주식회사)

- (주의사항2) 접수 시 **'제출서류 순서'**

0. [자료일체] 모범여성기업인_홍길동(길동주식회사) 작성자료(서명날인본) 및 증빙(1~15)
0. [작성자료] 모범여성기업인_홍길동(길동주식회사)
0. [총괄표] 모범여성기업인_홍길동(길동주식회사)
1. '22년, '23년 표준재무제표, '24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2. 사업자등록증명원
- 2-1. 말소사항포함 법인등기부등본
3. 경력증명서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22년, '23년, '24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6. 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명부
7. '22년, '23년, '24년 수출실적확인서
8. 지식재산권 사본(국내외 규격, 특허, 디자인등록, 실용신안 등)
9. 기타 인증 사본
10. 여성고용 우수 및 유지실적자료
11. 훈포장, 장관표창 등 표창 사본
12. '22년, '23년, '24년 기부금 영수증(앞장 연도별 총액 기재 필수)
13. 여성기업확인서
14.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15. 공적조서 상 기타 증빙(조달실적, 여성친화경영, 근로자 중심 경영, ESG 경영 등)

□ 선 정

- 제출서류에 의한 예비 심사 및 현장실사를 토대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수상자 결정

□ 선정절차

- (신청·접수) 추천기관이 추천한 모든 추천자 접수
- (요건심사) 신청자격 적격여부, 제출서류 적정성 등 평가
- (제한사항 확인) 범죄·수사경력, 산업재해, 불공정 행위, 국세·지방세 체납 조회, 사회적 물의 야기 등 제한사항 확인
- (공적평가) 심사위원은 대학교수, 업계전문가 등 여성 정책분야에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로 구성
- (포상협의) 행정안전부와 포상규모 협의
- (공적심사) 중기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포상추천대상자 공적심사
- (공개검증) 중기부, 협회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
- (포상추천) 행정안전부에 포상대상자 추천
- (포상확정) 행정안전부가 포상대상자 확정 후 결정 통보
- (수상발표) 수상자에 한하여 2025년 6월 말 개별통보(예정)